

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1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1. 24
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1. 24

(제1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 : 보건소장 서 대 식

나. 제안사유

-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직명을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명칭개정
 - 제3조제4항중 “기획예산실장”을 “기획감사실장”으로 한다.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장현범)

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

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중 “기획예산실장”을 “기획감사실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~ ③(생략)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, 사회복지과장, 보건소장이 된다.</p>	<p>제3조(구성) ① ~ ③(생략) ④ - - - - - 기획감사실장, - - -</p>